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 대상
- 간장은 '26.12.31.부터, 당류·식용유지류는 '27.12.31.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7월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업계·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하였다.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5. 12. 30., 시행 '26. 12. 31.)

기존에는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설의 개·보수 등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식품유형 및 시행시기>

구분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식품 유형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 분해간장, 혼합간장, 혼합장, 기타 장류	설탕류(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 가공품),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엿류(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당류가공품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 동물성유지류(식용우자돈지 등),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
시행 시기	'26.12.31.부터	'27.12.31.부터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마련 등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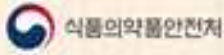
개정된 행정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GMO 완전표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카드뉴스)

<붙임2> GMO 표시, 이렇게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조 (043-719-2191)
		담당자	주무관	김현정 (043-719-2192)





국민 안전이 기본입니다

GMO 표시제도

유전자변형식품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

최종 식품에서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



개선

현재 +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까지 표시 확대
*간장,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



GMO 대두, 옥수수 등 사용 DNA 불검출

GMO 표시

“소비자는 GMO 원재료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 12. 31.
간장

2027. 12. 31.
당류, 식용유지류

붙임2

GMO 표시, 이렇게 확인하세요!

□ 표시방법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

- **(주표시면)**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또는, **(정보표시면)**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함

* 일반적인 표시 사항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

□ 표시사항 예시

주
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

제품명	간장
식품유형	양조간장
원재료명	발지대두 (유전자변형된 대두), 소맥
소비기한	숙면 하단 표기일까지
제조원	OO 식품

제품명	물엿
식품유형	물엿
원재료명	옥수수전분 100% (유전자변형된 옥수수)
소비기한	숙면 하단 표기일까지
제조원	OO 식품

제품명	콩기름
식품유형	콩기름
원재료명	대두 100% (유전자변형된 대두)
소비기한	숙면 하단 표기일까지
제조원	OO 식품